2023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지원대상: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50개사 내외
 - 8개 품목: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스마트팜 포함), 종자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분야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 분야 1, 2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단, 지원업체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 지원내용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 '23.1.1~11.10.내에 해외 인 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 '23년 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23.1.1.~11.1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 지원기간('23.1.1.~11.1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및 취득 후 제출

구 분	지원내용
인증범위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한도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 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 해외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붙임. 운영지침 참조)
지원기간	∘ '23. 1. 1.(일) ~ '23. 11. 10.(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23.11.10. 이후 집행할 시 사유서 사전 제출 및 농정원 승인 필수
지원방식	◦ 선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 '23. 11. 1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정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 '23.1.1. ~ 11.10.내에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수출국 현지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 금액)의 70% ※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현지 홍보·광고,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임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붙임. 운영지침 참조) * 지원기간('23.1.1.~11.10.) 내 개최하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차비 등 선금필수집행분('21년 실집행 한정)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단, 농정원 사전 승인 필수)
지원기간	∘ '23. 1. 1.(일) ~ '23. 11. 10.(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23.11.10. 이후 집행할 시 사유서 사전 제출 및 농정원 승인 필수
지원방식	◦ 선정업체는 마켓테스트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 '23.11.1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정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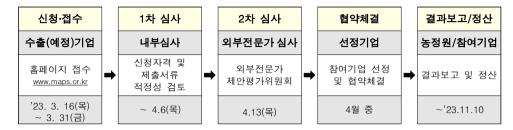
□ 추진절차

	T		
농정원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V			
신청기업	홈페이지 내(maps.or.kr) 사업참여 신청 * 협회 추천서 수령 등	농정원	관리기관(회계법인) 선정
V			
농정원	1차 서류 평가		
V			
농정원	2차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결과 통보		
V			
선정기업	사업비 전용 계좌 및 e나라도움 카드 개설 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V			
농정원	e나라도움 사업 승인 및 선금(잔금) 교부		

	V		
선정기업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집행		
	V		
농정원·관리기관	중간점검 및 사업 모니터링		
	V		
선정기업	완료보고 제출 및 정산처리(e나라도움)		
	V		
관리기관	기업별 지출내역·증빙자료(e나라도움) 검토 후 정산보고서 작성, 사업 완료보고 제출(→농정원)		
	V		
선정기업			
	V		
농정원	지원기업 대상 의견수렴(사업만족도, 개선의견 등)		
* 적차 · 정사서류 아내 및 진행증빙 검증은 회계번이 여계 가능			

- * 절차·정산서류 안내 및 집행증빙 검증은 회계법인 연계 가능
- * 사업절차는 사업별로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 추진일정



-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설명회 : '23, 3, 23,(목), 14:00 ~ 15:00
 - *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자(https://naver.me/5BxTs2Sy) 대상으로 설명회 당일 링크 제공
- 접수기간: '23, 3, 16.(목) ~ 3, 31.(금), 15:00 까지
- 1차 심사 : '23. 4. 6.(목) 예정
- (심사위원) 농정원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 내부심사
- (평가항목) 신청자격, 공모 적합 여부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등
 - * 지원 대상의 2배수 내외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자격요건 미달 시 1차 심사에서 탈락
- 2차 심사 : '23. 4. 13.(목) 예정
- (심사위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항목) 사업 준비 현황, 수출가능성, 수출실적, 추진전략, 지원금액 등 *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차순위 기업으로 결원 발생 시 지원 가능
- ☐ 신청방법 : '농기자재 수출정보서비스(www.maps.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사업신청 매뉴얼([별첨], 32p~44p)을 참고
- 작성항목은 '2023년 농기지재 수출기업육성 사업운영지침(붙임)' 첨부서식(12p)을 참고
 -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www.maps.or.kr) 사이트 회원가입, 농정원 관리자의 가입승인 이후 지원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① (필수) 사업 참가신청서 1부[maps.or.kr 기업지원 페이지 내 작성 제출]
- ② (필수) 사업계획서 1부[maps.or.kr 기업지원 페이지 내 작성 제출]
- * 기업명 기재하지 말 것
- ③ (필수) 온라인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minwon.dataline.co.kr/epis.nice)
- * 최근 3개년('19~'21)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 온라인 동의처리 관련 문의처 : 02-3771-1155
- * 온라인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기업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 제출 필요
- ④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선택) 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

○ 계량평가 반영 증빙 자료

가. (가산점 증빙) 최대 5점까지 반영

항목	점수	비고
① 협회 추천 기업 * 협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한국 단미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시설 원예협의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5점	[참고2]협회 추천서
② 중소기업 또는 기타 상생기업	5점	상생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 기업 * New Excellent Technology 	3점	개당 3점, 최대 3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창업기업(3년~7년 미만), 현 지 실증(테스트베드) 기 수행완료기업	2점	개당 2점, 최대 2점

- * 가점서류 사본 제출 : ① 협회추천서, ②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완료 증빙(현지 공신력 있는 실증관련 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 실증 결과보고서 등),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7년 미만 신생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 * 2022년도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우선선발
- * 증빙서류(확인서)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 * <참고> 단.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항목 내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참고> 가점부여 예시

사례 1. 협회 추천기업 = 가점 5점 사례 2. 벤처기업 + 여성기업 = 가점 5점 사례 3. 창업초기기업 + 벤처기업 = 가점 3점 사례 4. 사회적 기업 + 여성기업 = 가점 2점

- 나. (실적증빙) 계량실적 평가실적증빙 제출 목록(선정평가 항목 참조)
- 수출계약서/MOU 사본
-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 실적(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미팅 등)
- 국내외 인증서(ISO, HACCP, GAP, GMP, KGMP 등)
- 수출제품관련 특허(출원) 등록증
- * 증빙서류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계량평가 미반영

□ 유의사항

- O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상에는 업체명을 직접 기재하지 말 것
- 2차 평가 진행시 '사업계획서'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할 것
- O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지원 사업에서 제외
-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감소가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

□ 문의처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https://www.maps.or.kr) "고객센터"메뉴 Q&A 게시판
- O 농정원 국제통상협력실 농기자재 담당자(044-861-8847, episk@epis.or.kr)
- 많은 분들의 문의로 인하여 담당자 전화 응대가 실시간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이트의 고객센터 Q&A 게시판을 우선적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2023. 3. 1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기업 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통상협력실」

[기업정보의 이용 목적]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신용정보) 등

[신용정보 조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 국고보조금 지급 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 및 위탁업무 내용]

- ㈜NICE평가정보 : 기업 신용정보 조회

[기업 신용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기업은 신용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직인)

【참고1】지워업체 선정평가 항목

2023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선정평가 항목

가. 선정방법

- O 1차(적합여부) 및 2차(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발
- 계량(50점), 비계량(50점, 평가 평균점수), 가산점(5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위로 선정
 - * 동점인 경우, 가산점 서류 제출 기업, 비계량 점수, 계량점수 고득점 기업 순 우선 선정

나. 평가항목

구분	항목	평가내용	비고		
계 량 (50)	잠재력	수출가능성	수출계약서 · MOU(최대 2건 증빙제출)		
		수출성장기업 (최근 3개년도 실적 참고)	기업의 수출실적 제공동의를 통해 수출실적 조회*		
	수출 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사업 준비 현황	해외마케팅 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미팅 등 해외마케팅 활동 실적 (최대 2건 증빙제출)		
		국내외 인증취득 실적 및 제품관련 특허 보유(ISO 등)	최대 2건 증빙제출		
비 계 량 (50)	사업성	품목 및 국가 수출확대 가능성 등	-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내용 등 적정여부	-		
	작성 충실도	사업신청서 작성 충실도	-		
가 산 점 (5)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혁신 충족 여부	* 가점서류 시본 (1) 협회추천서 (2)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현지 실증(테스트베 완료 증빙(현지 공신력 있는 실증관련 기관의 직인이 포현 공식 실증 결과보고서 등),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3, 7년 미만 신생기업(시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항목 내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 수출기업 우수시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업 우선선발

【참고2】 협회 추천서 서식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협회 추천서

협희 정보			
분야(품목)		협회명	
추천 순번		담당자	
	기업	정보	
기업명		지원분야	인허가□ 마켓테스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지원금 (국고보조금, 자부담 포함)	원
추천 사유	 ◆수출준비도 ◆수출가능성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제하여 주시기	l 바랍니다.(100자 이내)

상기 내용과 같이 농기자재수출기업육성 사업 지원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협희명 (직인)